

2023년도 “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”

'23.5.22.

『**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**』이라는

산업안전 패러다임의

핵심 수단인 **위험성평가 제도**

대대적으로 개정, 그 내용은?



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
산재예방지도과

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

대부분 **사고**는

1. 추락(42.4%)
2. 끼임(11.5%)
3. 부딪힘(8.7%)에서
발생합니다.

중대재해 발생의 62.6%를
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은
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!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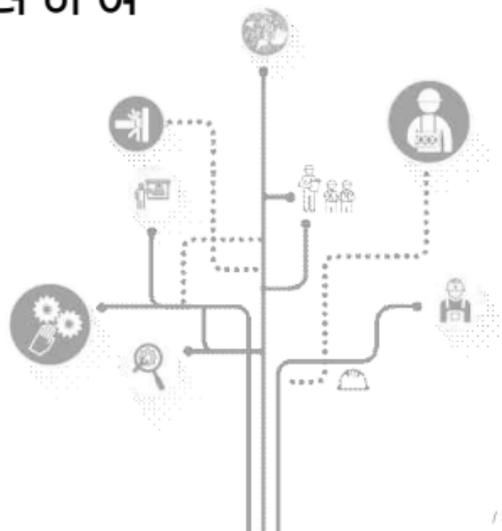
자기규율 예방 체계에 대해서

‘자기규율’이란 노사가 협력하여 자치적인 안전규범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**기업 스스로**가 위험을 통제·관리·감독하는 **위험성평가**를 말합니다.

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현실을 입니다.

이번 **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**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**다양한 방법을 소개**하고 **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**하였습니다.

중소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**위험성평가의 확산·안착**으로 **실질적 산업재해 감소**를 실현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목 차

1. (도입) 위험성평가는 왜 하는 것인가?
2. (개정) 위험성평가 개편 방향은?
3. (점검) 우리 부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
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?
4. (당부)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은?



1. (도입) 왜(wh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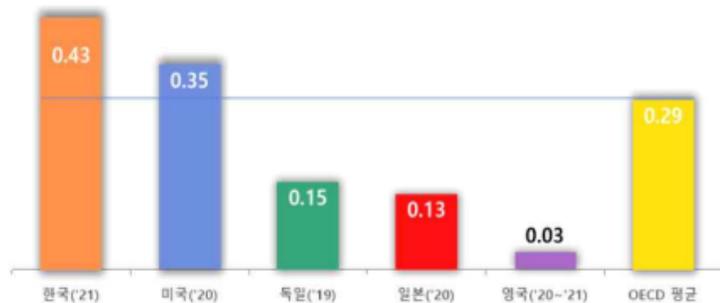
위험성평가는 왜 하는 것인가?

2022.11.30. 정부에서 발표한“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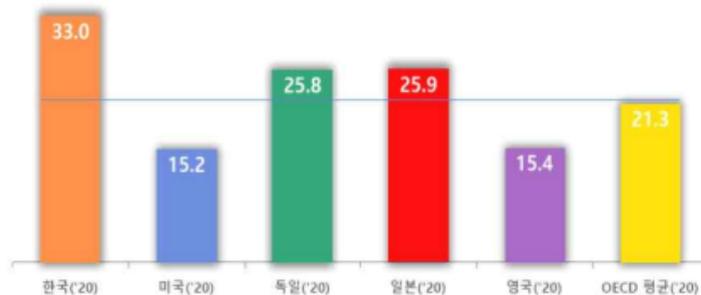
1-1. <진단>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정책추진의 현 주소

우리나라 중대재해는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

- '21년 사고사망자 828명, 사고사망 만인율 0.43
-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
- 제조·건설업 중심 산업구조+원·하청 고용구조 → 높은 중대재해 위험



주요 선진국 사망사고 현황 비교



주요 선진국 제조·건설업 비중

1-2. <진단>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정책추진의 현 주소

우리나라 중대재해는 OECD 38개국 중 34위, 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많고,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, 최근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(0.43) 정체

“1981년 산업법 제정이래 ‘규제와 처벌’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전략 유지” 로

기업 자율 예방 체계 형성 미흡

- 기업 자체적 위험요인 개선 시스템과 역량 빈약
- **안전보건 역량 강화 보다는 처벌 회피에 집중**
- 과거와 발생한 재해와 같거나 유사사고 재발
- 기업에 공유 및 활용되지 못하는 정부 ‘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보고서’

여전히 미성숙한 안전의식·문화

- ‘생산’ 우선 관행, 전 사회의 ‘안전을 보는 눈’ 취약
- 안전의식·문화 활동- 단발성의 캠페인 위주
- 안전보건 교육- 획일적인 내용과 방식

“개별 작업장의 모든 위험요인을 망라하는 게 매우 어렵다”

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**법령·감독·행정**

- 산업안전보건법령- 낮은 현장 수용성
- 산업안전감독- 위반 사항 적발과 처벌에 중점
- 위험성평가- 기업 66.2%가 미실시
- 민간 기술지도- 법 위반사항 위주, 공급자 중심 지원

안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

- 관리자 등 일부 특정인만이 책임이 있다고 인식
-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, 부가적 요소로 치부
- 근로자의 ‘의무’로서의 인식 부족
- 원·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불명확



1-4. 로드맵의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

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

-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
-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 위한 감독행정, 법령·기준 정비



②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·관리

50인미만 80.9%	건설·제조 72.6%	추락·끼임·부딪힘 62.6%	하청 40%	새로운 위험
중소기업 집중지원	스마트 기술·장비 중점 지원	8대 요인 현장중심 특별관리	원하청 상생협력 강화	산업구조 및 기후변화 대비

③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·문화 확산

-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
-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(중앙·지역·업종)
- 현장 중심 안전보건교육 강화

④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

- 전문기관 간 연계 협업
- 응급의료 비상상황 대응체계
- 중앙·지역 협업·거버넌스

1-5. 위험성평가는 왜 하는 것인가?



위험성평가를 하는 이유, 핵심 중의 핵심!

핵심
1

“위험을 찾으면 안전이
보입니다.”

일반적으로, 위험한 상태나 상황
이 **보이면** 자연스럽게 그 **해결방
안을** 찾게 됨.

핵심
2

“사업장의 위험은 근로자가
가장 잘 압니다.”

작업을 직접하는 **근로자가** 작업 과
정의 **위험과 그 감소방법**을 잘 압
니다.



핵심
1



핵심
2



파악·참여
공유

“유해·위험요인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
근로자가 참여하고,
그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
모두가 공유해야 합니다.”

2. (개정) 위험성평가 개편 방향은?



하나

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이 추가됩니다.

둘

평가 시기, “확” 바꿨습니다.

셋

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합니다.

2.(개정) 위험성평가 개편 방향은 ?



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이 추가됩니다.

- 평가방법 선택권 보장 빈도·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수준 3단계 등 **간편한 방법 제시**

* ①기존의 빈도·강도법 + [신설]②체크리스트법, ③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, ④핵심요인 기술법(One Point Sheet) 등

평가 방법	주요특징	권장 사업장
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	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쉬움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.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함	중·소규모 사업장
체크리스트법	간단함, 빠른 결정 가능 신뢰성 및 일관성 높음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에 경험, 지식 등 전문적인 능력 요구	중·소규모 사업장
핵심요인기술법	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기 효율적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용이함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움	중·소규모 사업장

2.(개정) 위험성평가 개편 방향은 ?



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

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, 위험성 수준을 “상·중·하” 또는 “저·중·고”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,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

①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



② 위험성 결정

‘상’·‘중’·‘하’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



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안전조치 실시



■ 평가대상 : 비계설치공사

번호	유해·위험요인 파악 (위험한 상황과 결과)	위험성의 수준 (상·중·하)	개선 대책	개 역
1	비계의 작업별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상·중·하		
2	비계 조립 작업 중 강관 등 자체가 떨어져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맞음 위험	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상·중·하		
3	비계 조립 작업 시 강관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	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상·중·하		
	⋮			

2.(개정) 위험성평가 개편 방향은 ?



체크리스트법

평가대상에 대해 **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**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하는 방법, 각 항목에 대해 **“○” 또는 “X”** 등으로 표시하여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방법

①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

② 위험성 결정



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체크리스트 항목 작성



각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수준 여부 판단



안전조치 실시



■ 평가대상 : 자동처 부품 가공공정

번호	유해·위험요인 파악 (체크리스트 항목)	위험성 확인결과			개 대
		적정	보완	해당 없음	
1	프레스에 방호장치(광전지식, 양수조작식 등)가 설치되었는가?		✓		
2	프레스 방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		✓		
3	유압 프레스에 안전블럭을 구비하고 있는가?	✓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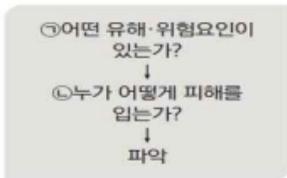
2.(개정) 위험성평가 개편 방향은 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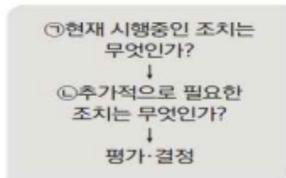
핵심요인 기술법

영국, 국제노동기공에서 중·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방법으로 **핵심질문**에 **답변하는 방법**으로 실시, 전등 및 부품 교체 등 **간단한 작업**에 대해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 기록할 수 있음.

①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

② 위험성 결정



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

어떤 유해·위험요인이 있는가?	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?	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?
정비 중인 컨베이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비 작업자가 설비를 청지하고 정비하던 중 불시 가동된 컨베이어 회전체에 끼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비작업 시 설비정지 근로자에게 작업절차 교육 실시
지게차 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행 중인 근로자가 화물을 싣고가는 지게차와 충돌 ☆ 22년 하차사고 사례 여름철 옥외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열사병에 걸림 지게차가 배수로를 밟아 넘어지면서 탈출하던 운전자 또는 보행 중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걸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지게차 경광등, 경보장치 설치 헤드그드 위에 가림막 설치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 배수로에 그레이팅 설치

2.(개정) 위험성평가 개편 방향은 ?



평가 시기, “확” 바꿨습니다.

- 평가시기 명확화·간소화
최초평가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도 인정
- 상시평가 제도 신설
공정 변동이 잦은 건설업 등은 매월 위험성평가를 1회 이상 실시, 주 단위로 안전·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공유·논의, 매 작업일 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실시할 경우 수시·정기평가 실시 인정

2.(개정) 위험성평가 개편 방향은 ?



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합니다.

- 근로자 참여 확대

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, 사업장의 유해
·위험요인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

- 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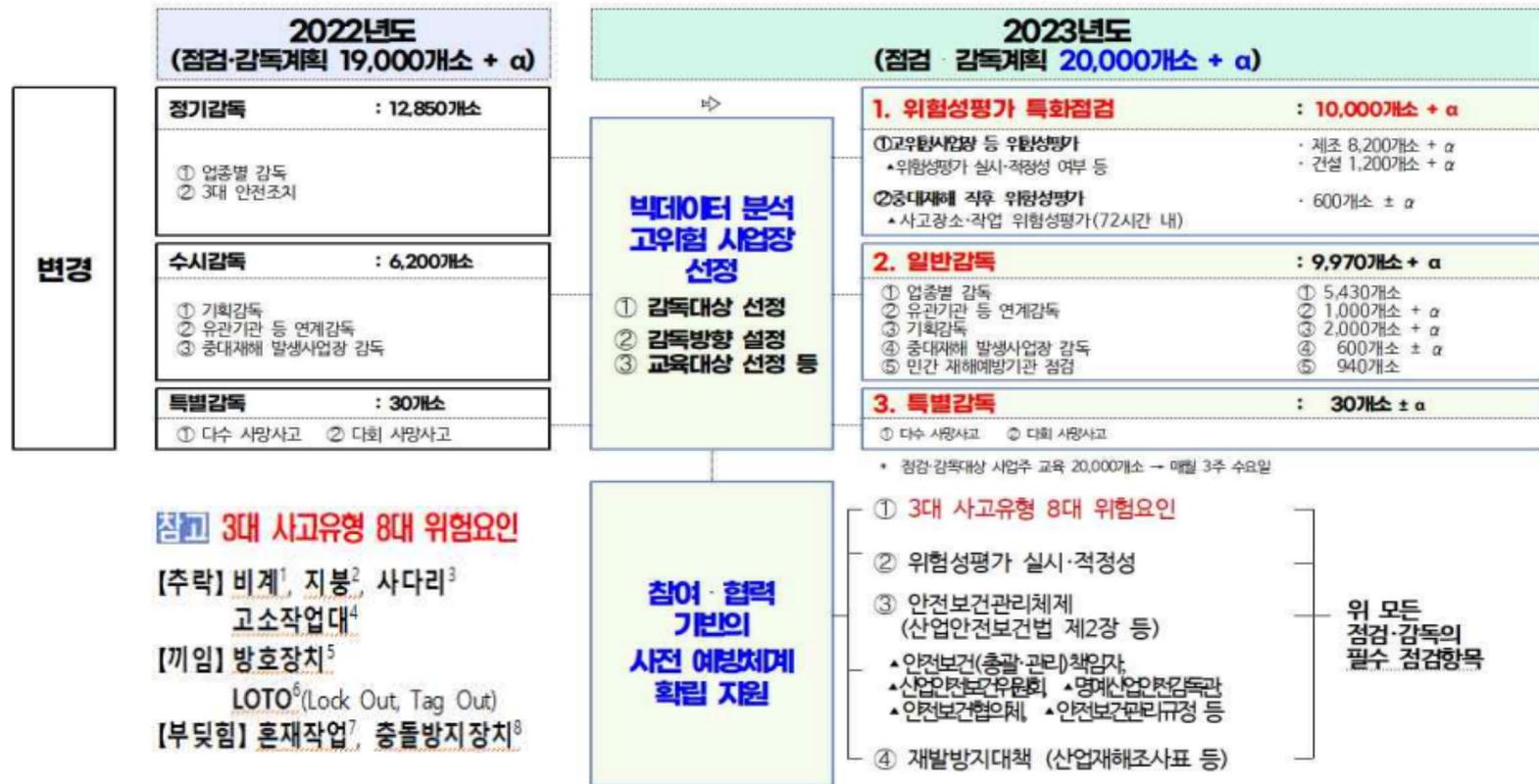
안전보건교육 시 교육 내용에 포함, 작업 전 안전점
검회의(TBM)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
규정 신설

3.(점검) 우리 부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?



3. (점검) 우리 부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?

『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체계』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➡ 감독체계를 **위험성평가 중심으로** 전환



3. (점검) 우리 부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?

면담 핵심질문

-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면담 시 핵심 질문 확인
 - 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나요?
 - ② 위험성평가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있나요?
 - ③ 아차사고, 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있나요?
 - ④ 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혹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요인이 무엇인가?
 - ⑤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나요?
 - ⑥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(TBM), 안전교육 등을 통해 공유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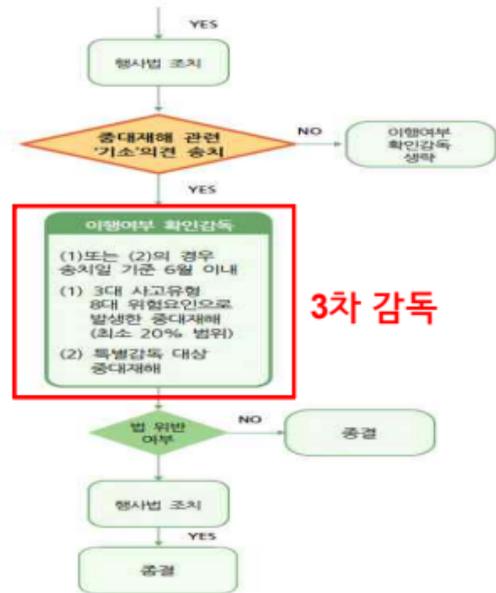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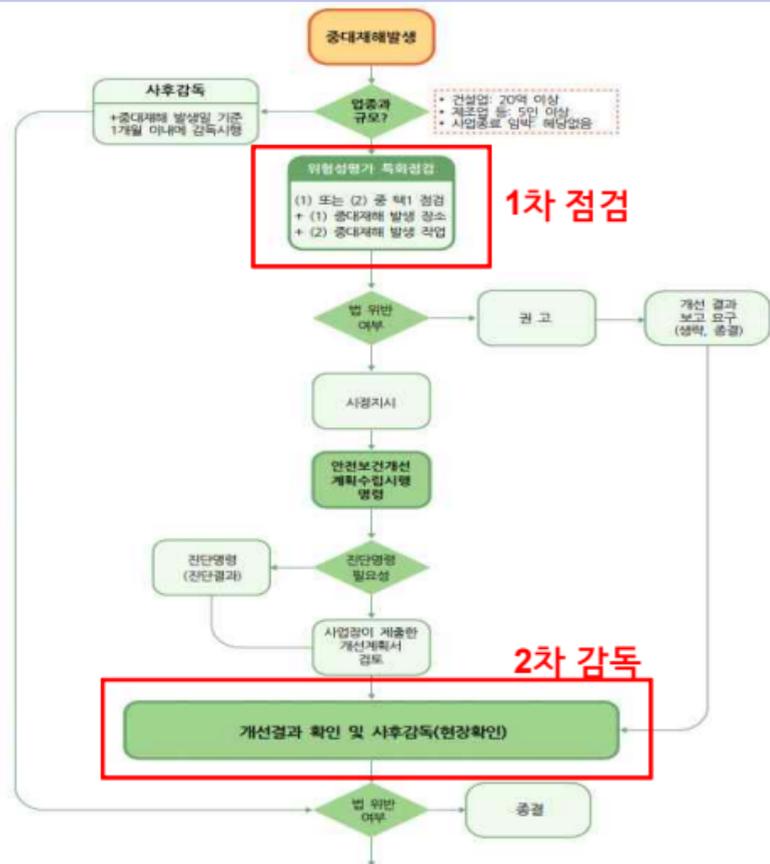
현장 확인

-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미리 분석한 사업장의 위험요인 중 **가장 유해·위험도가 높다**고 볼 수 있는 일부 장소 또는 작업을 선택, 기존 점검방식으로 수행 - 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'위험성 평가'의 누락 여부 검토

안전보건 관리체제 점검

-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주체들에 대한 역할수행 여부 꼼꼼히 점검
→ 우선, '**위험성평가**' 중심의 역할을 점검하고 확인범위 확대

3. (점검) 우리 부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?



-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'위험성평가 특화점검'은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, 사업장 내 전체 유해·위험요인 등을 발굴·개선하도록 시정조치

4. (당부)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은?



4. (당부)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은?



민간재해예방기관도 안전원팀

역할
1

▪ 지도·조언·교육자로서의 역할

현장의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,
안전조치,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
항을 지도·조언·교육을 수행

역할
2

▪ 관심·참여 유도자로서의 역할

사업장에게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
게 하고 근로자도 참여하게 유도



역할
1

+

역할
2

=

안전
원팀

민간재해예방기관은 안전원팀의 일원으로
위험성평가를 현장에 확산하여 안전하고
건강한 일터 조성

꼭 기억해 주세요!



민간재해예방기관도 “안전원팀”
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널리 안착되어
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
함께 만들어 주세요.

감 사 합 니 다

